

## 13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보고

제106회기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사업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박병호  
서 기 이형만

### 1. 조직

- 위 원 장 : 박병호
- 회 계 : 임중환
- 위 원 : 강재식 강진상 장창수 이민호 백장현
- 서 기 : 이형만
- 총 무 : 최광영

### 2. 회의

#### 1) 전체회의

#####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11. 24(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박병호 목사, 서기: 이형만 목사, 회계: 임중환 장로, 총무: 최광영 목사
- ② 아래와 같이 소위원회를 조직하다.  
가. 조사처리소위원회 (위원장) 이형만 목사, (위원) 박병호 목사, 백장현 장로  
나. 이사선임조사소위원회 (위원장) 강재식 목사, (위원) 최광영 목사, 임중환 장로  
다. 미래발전소위원회 (위원장) 강진상 목사, (위원) 장창수 목사, 이민호 장로
- ③ 총신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기독신문에 게재하기로 하다.
- ④ 조사 후 처리는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⑤ 소위원회의 결의 시행은 본 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시행하기로 하다.
- ⑥ 조사처리 및 이사선임조사소위원회는 내년 2월 말 안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기로 하다.
- ⑦ 각 소위원회는 차기 회의 때 앞으로의 일정 및 방향 등을 보고하기로 하다.
- ⑧ 차기 회의는 12월 16일(목)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 (2) 제2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1. 12. 16(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위원장이 각 노회에서 제출한 총신관련 현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다.
- ② 조사처리소위원장 이형만 목사가 일정 및 방향에 대해 구두로 보고를 하고, 총신대 법인국으로 부터 서류 제출을 요청하니 허락하기로 하다.
- ③ 이사선임조사소위원장 강재식 목사가 유선 상으로 일정 및 방향에 대해 보고를 하니, 사실관계



확인 중에 증인 확보의 어려움과 차기 회의 때 참석하여 보고할 것을 설명하다.

- ④ 미래발전소위원장 강진상 목사가 해당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니,
  - 가. 총신대 재정 400억원을 법인국으로의 전용의 건은 총신 기본 자산인지 확인하고 법적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다.
  - 나. 총신대학교와 총신신학대학원의 분리의 건은 교육부에 분리가 가능한지 법적 확인과 정관 개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기로 하다.(공청회는 추후)
  - 다. 운영이사회 복구의 건은 유지재단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지와 총신 법인 정관 개정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차질 없이 진행기로 하다.
  - 라. 다음의 사항을 총회임원회에 청원기로 하다.
    - a. 법인이사회 이사 임원을 5~6명 증원 청원하기로 하다.
    - b. 운영이사회 복구 후 임원 3인을 법인이사 당연직으로 법인 정관 개정 요청기로 하다.
- ⑤ 차기 회의는 1월 7일(금)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 (3) 제3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2. 1. 7(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미래발전소위원장 강진상 목사가 최근 미래발전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하니,
  - 가. 총신대학교와 총신신대원과의 분리는 교육부에 구두로 문의를 하니 현실적 불가함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제107회 총회 때 보고하기로 하다.
  - 나. 총신대 재정 400억 원은 법적으로 전용이 불가하고 특히 법인으로의 유용은 완전히 불가함을 확인하니, 총신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제107회 총회 이후 후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인국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회에 현의하기로 하다.
  - 다. 총신운영이사회는 차기 실행위원회의 때 다음 사항과 함께 복구 청원기로 하다.
    - a. 총회와 재단이사회와의 관계를 위한 관계 역할과,
    - b. 전국 노회 및 교회로부터의 협력 관계와,
    - c. 노회 지원으로 법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 d. 총회 산하 기관으로서 운영이사회의 지도 및 협력을 위한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 요청하고,
    - e. 총회의 지도를 위한 운영이사회 이사장, 서기, 회계 등의 당연직 재단법인 이사로 청원하기로 하다.
- ② 이사선임조사소위원장 강재식 목사가 보고를 하니, 재단이사 선임과정에서 1) 교육부 의견서, 2) 교수협의회 및 원우회 등의 의견 및 성명서, 3) 개방이사추천이사회 및 총신 측과 총회 측의 추천과정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조사처리소위원장 이형만 목사가 보고를 하니 이재서 총장, ○○○ 교수, ○○○ 교수, ○○○ 국장 등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보고를 위하여 ○○○ 교수 및 원우회와도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로 하다.
- ④ ○○○ 교수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해서는 법원판결과 사실 조사관계는 보고하기로 하다.
- ⑤ 총신대 법인과에 요청한 서류와 관련하여 속히 제출하도록 재촉하기로 하다.
- ⑥ 차기 회의는 2월 10일(목)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4) 제4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2. 2. 10(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실행위원회에 대비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모이기로 하다.
- ② 미래발전소위원회 서기 장창수 목사가 보고를 하니, '제3차 미래발전소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받기로 하다.

(5) 제5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2. 3. 17(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3월 24일(목) 총회실행위원회에서
  - 가. 각 소위원회가 맡은 부분을 소위원장이 보고하기로 하다.
  - 나. 총신운영이사회의 복구를 청원하기로 하다.
  - 다. 정이사 선임과정의 불법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기로 하다.
  - 라. 조사처리소위원 보고하기로 하다.
  - 마. 총신대 관련 현의 및 조사와 관련하여 내부조력자가 있을 경우 처벌과 불이익이 없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② 차기 회의는 4월 28일(목)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6) 제6차 전체회의

☞ 일 시 : 2022. 7. 27(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실행위원회 보고는 임시보고로 하고 정식보고서 작성하여 완전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하되, 4인(위원장, 서기, 이사선임조사소위원장, 미래발전소위원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 ② 총신운영이사회 시행의 건은 총회에 청원 보고하여 결의 즉시 노회로 하여금 총회로 이사 선정하여 보고케 하고, 2022년 11월 30일까지 조직 시행을 청원하기로 하다.
- ③ 4인 위원회 모임은 8월 5일(금) 오후 2시 GMS에서 갖기로 하다.
- ④ ○○○ 씨 처리와 관련하여 총신대학교에 총회결의를 전달하고, 요청 불이행 시 총회보고는 다르게 할 수 있음을 함께 통보하기로 하다.
- ⑤ ○○○씨 건과 관련하여 총신대학교가 불이행 시 4인(위원장, 서기, 이사선임조사소위원장, 미래발전소위원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2) 조사처리소위원회

(1) 제1차 조사처리소위원회의

☞ 일 시 : 2021. 11. 24(수) 12:05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차기 소위원회 회의 때 총신대학교 ○○○ 교수를 참석 요청하기로 하다.



- ② 차기 소위원회 회의는 11월 29일(월)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2) 제2차 조사처리소위원회의

☞ 일 시 : 2021. 11. 29(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조사처리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기로 하다.  
위원장: 이형만 목사, 서기: 백장현 장로, 위원: 박병호 목사
- ② 조사의 절차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하기로 하다.  
가. 현의서를 근거로 조사하기로 하다.  
나. 현의발단의 원인을 12월까지 파악하기로 하다.  
다. 원인의 원인 즉, 숨겨져 있는 이면의 내용까지도 1월말까지 조사하기로 하다.
- ③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하다.  
가. 제1원인자: 총신대학교 사실 관계자(문제 탄원자)  
나. 제2원인자: 주요 현의서를 제출한 경기중부노회와 경성남노회(제출된 서류 확인 요청)  
다. 제3원인자: 총신 관계자
- ④ 제1원인자와 내용 확인을 위해 11시 35분에 정회하기로 하다. 오후 1시에 속회하다.
- ⑤ 제1원인자와 현의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
- ⑥ 총신법인이사회에 현의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하고, 답변은 12월 14일(화)까지 요청하기로 하다.
- ⑦ 차기회의는 12월 8일(수) 오전 10시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되, 제3원인자들을 참석 요청키로 하다.

(3) 제3차 조사처리소위원회의

☞ 일 시 : 2021. 12. 8(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2021년 12월 14일(화) 총신대학교에서 오후 2시에 ○○○ 법인국장을 만나기로 하다.
- ② 2021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총회회의실에서 ○○○ 교수를 만나기로 하다.
- ③ 이재서 총장과의 만남은 보류하기로 하다.
- ④ 금일 11시 20분에 ○○○ 씨와 면담을 하고, 질의서에 답변케 하다.

(4) 제4차 조사처리소위원회의

☞ 일 시 : 2021. 12. 16(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다음과 같이 ○○○ 교수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가. ○○○ 교수가 질의서에 답변을 하다.  
나. ○○○ 교수가 ○○교회(○○○ 목사 시무)에서 총신대 지원금 내역서를 제출키로 하다.  
다. ○○○ 교수의 불법 승진에 관하여 교육부가 총신대에 전달한 답변서를 요청키로 하다.



(5) 제5차 조사처리소위원회의

☞ 일 시 : 2021. 12. 20(월) 10:00

☞ 장 소 : 총신대학교

☞ 결의사항

- ① 이재서 총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 ② 녹음을 녹취기로 하다.
- ③ 본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총신대 법인사무국에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제출기로 하다.

(6) 제6차 조사처리소위원회의

☞ 일 시 : 2022. 1. 20(목) 11:00

☞ 장 소 : 총신대학교

☞ 결의사항

- ① 일정대로 ○○○ 교수 및 ○○○ 씨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 ② 총회임원 및 총신재단이사와의 연석회의에 참석하다.

3) 미래발전소위원회

(1) 제1차 미래발전소위원회의

☞ 일 시 : 2021. 12. 14(화) 12: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소위원장: 강진상 목사, 서기: 장창수 목사, 회계: 이민호 장로
- ② 소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조각과 소위원회 업무 내용을 설명하다.
- ③ 미래발전소위원회의 주요 조사 및 연구 사항을 점검하다.  
가. 정관개정  
나. 입학생 감소 대책 수립  
다. 교수 수급 대책  
라. 학교재정운영계획  
마. 총신대 발전기금 책정의 건  
바. 총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 분리의 건  
사. 총신 살리기 운동(총신인재양성기금)  
아. 총신대 법인이사 구성에 여성직분자 포함의 건  
자. 총신대운영이사회의 폐지 결의(제104회 총회결의) 이전으로 환원 복구의 건
- ④ 학부와 신대원 분리의 건 및 총신 발전 방안 수립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미래발전소위원회의

☞ 일 시 : 2022. 1. 3(월) 12:30

☞ 장 소 : 대구대명교회

☞ 결의사항

- ① 학부와 신대원 분리의 건과 관련하여 교육부 문의 결과 분립은 별도 학교의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립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받았으나, 재단을 하나로 하고 소속 두 개 학교



로의 분립이나 별도의 두 개 재단 분립과 독자운영 모두가 행정상 많은 시간과 문제를 안고 있음을 논의하다.

- ② 운영이사회 복원 및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총회결의대로 복원이 타당하되 운영상 구체적 매뉴얼 정비와 운영이사 선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104회 총회 전 개정된 운영이사회 정관을 기초로 매뉴얼을 마련키로 하다.
- ③ 총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신학특성화' 학교로 전환하여 일반학과 축소 및 신학, 신대원을 집중 지원하고, 전국 교회 및 해당 교회에 홍보키로 하다.

### (3) 제3차 미래발전소위원회의

☞ 일 시 : 2022. 1. 28(금) 11:00

☞ 장 소 : 온라인

☞ 결의사항

- ① 지난 번 위원회 전체 결의사항 중 소위원회 보고와 상반된 내용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설명키로 하다.
- ② 총신발전기금에 관하여 총회 세례교인헌금에서 현재 총신대학교에 연 3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향후 총신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원금을 총 세례교인헌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정하고, 헌금의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회의 교세 성장에 따라 실질적인 추가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총회와의 관계 정상화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총신발전 안을 제시하기로 하다. (세례교인헌금에서 정액이 아닌 정률로 지원 변경하자는 의미)

## 소위원회 보고

### I. 조사처리소위원회 보고

위원장 이형만 목사  
 위 원 박병호 목사 백장현 장로

#### 1. 조사의 건

- 1) 총장 재정 불법 운영의 건
  - ① 팀장 보직자에 대한 이증수당 지급의 건
  - ② 교수 연구비에서 보직수당 지급의 건
- 2) 총장과 일부 교수들의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 인한 해 총회 행위
- 3) 총장의 규정 변경으로 인한 해 교 행위
  - ① 비전임교수 인사 규정(2007.11.28.제정) 개정
  - ② 교원 인사 규정 개정
- 4) ○○○ 교수 불법승진과 채용비리 의혹의 건
  - ① ○○○ 교수 불법승진
  - ② 직원채용 불법의혹 처리 건
- 5) ○○○ 교수 명예회복의 건은 법정판결과 본인상고 및 총신에서 징계변경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고

#### 2. 조사 방법

- 1) 총신에 협조공문 3차례와 수차례 유선으로 총회장과 조사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조 공문을 받지 못하여 조사의 난항이 있었다.
- 2) 조사대상자의 성실한 협조와 답변서류에 근거하여 조사서류를 작성하였다.
- 3) 각 노회에서 현의한 안전에 첨부된 자료들이 총신 서류 양식과 동일하고 이사회 회의록 등이 분명하여 증거자료 채택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 4) 이 같은 자료는 내부 협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추후 이 자료 협력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어야 할 것이다.
- 5) 총신대의 3차례 방문과 관계된 교수들과 수차례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 6) 이 보고서가 또 다른 사건의 발단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총신과 총회, 그리고 교육부와 관계 잘 정리되어 미래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염원한다.

#### 3. 조사 결과 보고

- (1) 총장 재정 불법 운영의 건
  - 1) 팀장 보직자에 대한 이증수당 지급의 건  
 총신대학교는 2015년 5월 1일 보직제에서 팀제로 별지와 같이 직제 개편을 하였다.

#### (별지1)

별지와 같이 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총장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자기 때에 개정한 것이 아니며 지급 시작이 아니라 이미 개정되어 지급하고 있던 상태였고 전 총장 때에 학교 운영 실패로 학생 감원 등으로 많은 규정이 바뀌었고 그 족쇄에 지금도 학교가 물려있다”고 주장하며, 그중



하나가 당시 직원들과 단체협상으로 공무원 호봉표를 임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장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교수와 함께 시도하였으나 직원들 반대로 실패하고 ○○○ 교수는 학교를 사임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이사 체제에 이것을 개정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직원들의 결사적 반대로 실패하였고 정 이사 체제에서 이것을 풀어보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며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7급은 직급 수당을 받으면서 또 팀장이므로 팀장수당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보이며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장 유용’이란 말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직원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당사자는 총장이고, 이 일을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람도 총장이다. 그러므로 이중지급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총신 경비의 부당 사용과 그리고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2) 교수 연구비에서 보직 수당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교수 연구비에서 보직 수당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별지2와 같이 팀 운영수당(직원에게 한함)을 팀장(처·부장급)과 팀장이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교수 연구비에서 직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보직수당 지급이 연구비 횡령에 해당한다는(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제1조제2조3항제6조) 위법 사실에 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한 분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고 즉시 중지시키고 본인이 회수하였다고 하며 이 사실을 부인했고, 담당자였던 ○○○은 회수한 적이 없고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획조정실장 ○○○ 지급명세표(2019년1월~2020년12월)에는 매월 64만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2019년1월30일 발생)

총장과 당사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급명세표에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총장과 일부 교수들의 부당한 정치 개입의 건

총장과 총장 지시와 학생들 선동으로 교육부 정 이사 선임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총장은 사실무근으로 주장하며 정 이사 선임에 관하여 원우회에서 임시이사 이전 이사에 관하여 강력저항을 하였고, 그 이유로는 이전 이사와 이전 총장 퇴진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아직 재학 중이었고, 그들은 매우 예민하게 대응하였고, 원우회 자발적이었고, 임시이사 체제 종식을 반대하기 까지 하였다.

특히 교수협의회에서 특정한 정 이사 선임반대(임시이사 이전이사와 김영우 총장 측과 측근 교수들 배제)에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석에서 ○○○ 목사와 이런저런 대화는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교육부에 자신의 의견을 누구를 통해서든 개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 교수 역시 이에 동의했다. 본인이 정 이사가 되기 위하여 총신 재단이사 정관계정을 요구하거나 정 이사 추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총회 현의안을 전면 부정했다.

그러나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장은 당연직이며, “이사회에 이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총신을 보고 바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와 “학생들 반대로 못 들어간 것 아니냐?”에 “자신이 판단하여 안 들어간 것이다”라는 답변과 “정 이사 선정이 잘 되어서 안 들어가고(정 이사회에) 밖에서 소통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답변 등을 종합하면 총장 이사 당연직 시도로 판단하기에는 또 다른 증거들이 필요해 보인다.



## (3) 총장의 규정 변경으로 인한 해 교 행위

## 1) 비전임교수 인사 규정

비전임교수 인사규정(2007.11.28.제정)을 제13조 처우에서

- ① 명예교수는 '만70세까지로 한다'를 '종신으로 한다'와
- ② '강의 담당을 할 경우 한 강좌(3시간) 이내로 강사비 지급을 하고 강의 또는 특별 연구를 75세로 한다'는 규정 개정에 대하여 ○○○ 교수가 한 것으로 안다며 인정하였고,
- ③ 그런데 비전임 인사규정 개정은 법인이사회 심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정관27조8항) 비전임교수 인사규정에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총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37조)로 되어 있는데 "2019년 6월28일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을 개정한 기록이 없다며 이사회 회의록에 개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장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하여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또 결재자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 2) 교원 인사규정 개정

- ① 총신 교수 신학 사상 검증을 이사회가 아닌 "교원인사위원회가 한다"로 개정된 사실과 (제2장 8조)
- ② 비전임계열 전임교원을 교수회의 불참하도록 개정된 사실 (제6장 30조2항)
- ③ 신규임용 절차에서 총장이 이사회에 복수 추천 규정을 폐지하고 (제7조3항)
- ④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학과(전공)의 동의를 얻어야만 채용 임용 절차를 진행토록 개정하였고 (3장 11조)
- ⑤ 교원신규임용 시행세칙 2장5조는 학과(전공)심의, 교수 동의 후 시행토록 한 점과
- ⑥ 신규 임원 공개채용 각 학과 (대학원은 각 전공)의 신청에 의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규정2장9조)

이 같은 개정에 대하여 "임시이사회에 신학 검증을 맡길 수 없어서 개정하였고 정 이사 때 수 정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비전임교수는 회의에 불참자(목사, 강사 등)가 많아 교수회의 정수가 미달 되고 인재 교수 채용 필요로 교원인사 규정 8조2항을 요구한다"로 총장은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개정은 이사회의 권한 침해가 분명하고 총회의 지도를 봉쇄하며 학교가 교원 중심의 학교로 규정을 개정함으로 법인의 권한을 축소 내지는 제한하였고 교수 중심, 총장 중심의 학교로 되었으나, 정이사 체제에서 교원 인사 규정 보고서 2번과 4번은 원상복구 되었고 나머지는 수정 진행 중에 있다.

## (4) ○○○ 교수 불법승진과 채용비리 의혹의 건

## 1) ○○○ 교수 불법승진: ○○○ 교수는 2019년 6월 28일 교원임용승진 건을 법인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실격되었다.

그러나 2019년 7월 3일 교원임용사항을 전교직원에게 통지하고 7월 29일 다시 신청하여 실격하였다. 8월26일 신청하였으나 실격하였고 2019년 9월 7일 이사회에서 정년보장 교직원 승진임용 결정하여 2019년 9월 23일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지문은 9월1일 발송일자를 기록하여 발송하였고 이 과정에 승진한 교수가 바로 ○○○ 교수다.



- 불법 1. 인사규정위반 : ‘재신임은 1회에 한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다. 하지만 3차로 재신임을 신청하였다.
- 2. 인사규정기간위반 : 당 해년 인사승진규정은 8월말로 종결된다. 9월은 기간 위반이다
- 3.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 당시 000 교수는 인사처장으로서 교직원 인사처가 교원 임용승진 사유를 법인과에 제출하는데 법인과에서는 이사회로 신청하여 결의하게 되어있다.
- 4. 상기 사실관계에 대하여 000 교수는 질의에 대하여 인사처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세 번이나 자필로 기록하였다. 이는 실제 이 승진과정은 인사처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시 인사처장이었던 000 교수, 그 본인이 한 일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 5. 2019년 8월26일 박태선 이사가 교원인사 처장이 본인의 승진 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규정을 떠나서라도 보통 대학의 기준에 어긋난 사항임을 지적하여 부결한 사실이 있다. 결국 지위를 이용하여 승진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법상 이사회결의 승인으로 원인무효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 6. 이 문제로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이상 없다고 함.

2) 직원채용 불법의혹 처리 건

총신은 임시이사체제에서 법인과 과장 임시직원 채용이 공고되었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은 2018년 11월에서 2020년 11월(2년)까지로 접수마감은 2018년 11월19일(월), 17시로 명명되었다. 그 기간 안에 접수된 자는 2명(000, 000)이었다.

2명을 면접기로 통지하였다. 그런데 11월12일 급작스럽게 면접취소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다시 면접 공고하여 2차 신청으로 11월26일 000, 000이 면접하였다. 그리고 000이 채용되었다.

- 문제 1) 직원채용불법 : ① 접수자 2명 면접 취소 위법  
 ② 2차 신청 접수 불법  
 ③ 2차 지원자 면접 불법  
 ④ 유00 채용불법, 흔히 채용비리이다.

2) 관련 ① 000 인사처장 즉 000 교수와 000은 동일교회 교인이다.

(00교회 000 목사시무, 000 협동목사, 000 집사)

② 당시 00교회는 총신 지정현금으로 5천만 원을 총신에 입금하였고 000도 5천만 원 임금을 체결하였다. (00교회는 총신 학생들의 장학금과 그리고 점심값을 수시로 후원한 사실이 있음)

③ 채용기간 위법 : 당시 000의 계약채용기간이 2019년 1월 3일 ~ 2020년 1월 2일 (12개월)로 채용되었다

④ 그런데 현재도 법인과에 000은 근무 중이다(임시직이 정규직으로 변환 채용되었다). 직원 채용은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따르고 절차의 적법성과 기회의 균등성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⑤ 정상회복을 위한 정이사조치 필요 요구함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었으니 임시이사체제의 불확실성을 바로잡고 총회와 총신과 교육부가 아우르는 법적 인재들이 필요하여 보인다.

## II. 이사선임조사소위원회 보고

위원장 강재식 목사  
위 원 최광영 목사 임종환 장로

### □ 정이사 선임과정의 불법 사항

1. 총장과 총장의 지시를 받은 교수가 학생들을 동원하여, 교육부 정 이사 선임과정에 개입한 사실에 대하여 총장은 사실무근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 이사 선임에 관하여 원우회에서 종전이사와 그 추천자에 대하여, 강력저항을 하였고 그 이유로는 종전이사와 종전 총장 퇴진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아직 재학 중이었고, 그들은 매우 예민하게 대응하였고, 원우회는 자발적으로 임시이사 체제 종식을 반대하기까지 하였다.

2. 특히 교수협약에서 특정 정이사 선임반대 (종전이사와, 김영우 총장측 추천과 측근 교수들 배제)에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석에서 ○○○ 증경총회장과 이런저런 대화는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고 교육부에 자신의 의견을 누구를 통해서 개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 교수 역시 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과 일부 교수들의 정이사 선임과정에 개입한 사건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는 없으나 당시 정이사 추천에 참여했던 학생대표들의 증언을 참고하면 내부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진행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3. 총장 본인이 정이사가 되기 위하여 총신 재단이사 정관계정을 요구하거나 정이사 추천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헌의안의 협의 내용을 전면 부정한다.

그러나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장은 당연직(?)이라 답변했다.

“이사회에서 이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총신을 바르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학생들 반대로 못 들어간 것 아니냐?”에 대해 “자신이 판단하여 안 들어간 것이다.”라는 답변과 “정 이사 선정이 잘 되어서 안 들어가고(정 이사회에) 밖에서 소통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답변 등을 정리하면 총장 이사 당연직 시도로 보인다.

- 1) 총신 정관 제18, 19조를 이사회에서 개정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2020.02.11. 이사회회의록)
- 2) 총장 정 이사 후보추천 총신대학교 평의회 회의록에 이재서 총장명이 사실상 기록되어 있으며 (총신대학교 평의회 회의록 2021.01.27.)
- 3) 이에 대하여 총신대학 총학생회 비상특별위원회 일동 성명서(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가 발표되었고 (2021.01.27.)
- 4) ‘정 이사 후보를 사퇴한다.’라는 이재서 총장의 성명서가 2021년 2월 2일자로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정 이사 선정과정 이전과 과정절차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본인이 정 이사에 실패한 원인도
  - (1) ‘임시이사는 정관계정 권한이 없다.’라는 대법원판결에 근거한 교육부 시정 요구로 되었고,
  - (2) 교수 평의회 추천을 원우회 학생들의 반대로 그 추천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며,
  - (3) 본인이 직접 총신 정 이사 후보 사퇴 성명서를 발표한 점으로 정 이사 선임 부정 개입이 분명하게 보인다.
4. 원우회와 교수협 ○○○ 외 15인이 종전이사와 전현직 총회임원 배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전현직 임원이 이사가 되면 총신이 정치화된다는 우려와 염려로 반대했으며, 누가 특별히 주도한 것이 아니라 는 의견을 진술했다.



단지 총장이 개선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총회 전현직 임원 배제를 성명서에 신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총회의 정체성이 훼손되었고 총회추천 인사들이 배제되었고 여성이사 진입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해 총회 행위로 보여 진다.

### III. 미래발전소위원회 보고\_총신운영이사회 복원 및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 청원

위원장 강진상 목사  
위 원 장창수 목사 이민호 장로

제안 설명 :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 재단이사회 이사를 30명으로 증원하기로 전제하고 총신운영이사회를 폐지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노회들은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을 제106회 총회에 현의 하자 총회에서 총신조사(처리) 및 중장기 발전 연구위원회를 9인으로 조직하여 실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 결의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였다.

1. 총회실행위원회에 총신운영이사회 복원을 다음과 같이 청원하다.
  - ① 총회와 재단이사회와 총신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역할
  - ② 노회에서 고시하여 위탁 교육을 하는 목사후보생(신대원생)의 효율적 관리 목적
  - ③ 노회 지원(운영이사회비)으로 법인 운영 지원 목적

※ 재단이사회 정관에서 “총신의 총회 직할”이라함은 총신이 총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이사로 구성된 총신운영이사회의 후원과 지도하에 있다는 의미로 사료됨
2. 총회 산하 기관으로서 운영이사회의 협력을 위해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을 요청하다.

##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총신운영이사회를 제103회 총회 때 통과된 총신운영이사회 규칙대로 원상회복하여 주실 것과,
2. 각 노회에서는 10월 임시노회에서 각 노회 1인씩 총신운영이사를 선정하여 주실 것과,
3. 선정된 이사로 총회장이 소집하여 11월 15일(화) 이내에 총신운영이사회 임원과 조직을 구성해 주실 것과,
4. 총신재단이사는 총신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추천한 자로 교육부에 신청하여 주실 것과,
5. 총신운영이사회 이사장과 서기는 재단이사회 당연직으로 교육부에 신청하여 주실 것과,
6.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청원사항 결의대로 즉시 총신재단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시행하여 주실 것과,
7. 위의 1번 ~ 6번까지의 청원사항은 결의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현장에서 회의록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또한 총신지원금은 지난 회기까지 세례교인현금에서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을 세례교인현금의 지난 회기 결산금액의 6퍼센트로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참고로 105회기 결산금액 57억 원을 기준했을 때 3억4천만 원)

2022년 9월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위원장 박 병 호

서 기 이 형 만